

수질개선부담금 개요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

□ 부과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먹는물관리법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부과 목적 및 취지

- 공공의 지하수자원 보호와 먹는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 지원
 -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
 -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 실시

□ 도입/시행 : 1995년 5월 먹는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도입됨

□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부과기관	징수기관
환경부	시·도지사	시·도지사

□ 부과대상

-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 기타샘물개발자가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단, 수출용, 국내 주둔 외국군대/주한외국공관 납품용,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제공한 먹는샘물은 제외)

□ 부과주체

- 샘플개발허가를 받은자(1일 300톤 이상) 또는 먹는샘물제조업자 : 샘플취수량 기준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 먹는샘물 수입량 기준

□ 부과방식 : 별도 고지서 발행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 먹는샘물제조·수입판매업자 :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675(6.75%)를 부과
-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 환경부장관이 고시
 - 산정방법 : 과거에는 생산원가의 7.5%를 부과하였으나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수돗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함

【기타샘물개발자의 샘물 1톤당 수질개선부담금】

수돗물평균요금(A)	물이용부담금평균금액(B)	수질개선부담금(A+B)
670원	153원	823원

자료) 환경부고시 제2008-31호(2008.02.19)

□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구 분		먹는샘물제조수입판매업자	기타샘물개발자
부과주기		매 분기별	매 연도별
판매실적보고 (업자→사·도지사)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납부	고지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일	다음연도 3월 10일
	기한	납부고지 한 달의 25일까지	
부담금부과 및 징수실적보고 (사·도지사→환경부장관)		다음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다음해 4월 20일
징수비용 지급 (환경부장관→사·도지사)		다음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다음해 4월 말일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부담금 (백만원)	계	13,179	9,608	10,723	13,661	13,325	14,638	16,979	18,467
판매량 (톤)	계	1,147,982	1,429,970	1,851,234	2,026,893	1,973,151	2,110,494	2,320,187	2,505,574
	국내	1,147,407	1,427,253	1,848,547	2,024,537	1,970,204	2,105,735	2,316,392	2,500,529
	수입	575	2,717	2,687	2,356	2,947	4,759	3,795	5,045
판매액 (백만원)	계	127,484	156,189	203,153	217,492	190,315	221,529	245,544	274,261
	국내	127,066	154,880	201,202	215,540	187,998	219,164	239,881	265,138
	수입	418	1,309	1,951	1,952	2,317	2,366	5,663	9,123

주 : 2000년은 먹는물관리법시행령의 개정(2000.7.1)에 따라 1/4분기는 20%, 2/4분기부터는 7.5%의 수질개선부담금 요율을 적용한 것임

□ 수질개선부담금의 사용

- 납부된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관리되며,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에 지급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
- 그간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관리시책사업비, 수질검사비용, 지하수보전구역지정을 위한 조사,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 수질검사 장비구입, 수질검사비용 등으로 집행
- 또한 시·도에 수질개선부담금 교부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법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금액이 미미한 경우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하나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도 수질개선 관련 예산이 더 많아 부담금 교부액이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 및 부과율 변경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006.6.29, 대통령령 제19571호)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타샘물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액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및 부담금 징수유예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

-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의 인하(영 제8조제1항)
 - 같은 샘물을 이용하는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타샘물간 수질개선부담금의 상대비율이 톤당 6,867원과 38원으로 과도한 불균형(181배) 현상을 보이고 있어,
 -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평균판매가격의 1만분의 750에서 1만분의 675 수준으로 인하·조정함
 - ⇒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이 6,867원/톤에서 6,180원/톤으로 인하되고 기타샘물은 부과방식이 개선되어 먹는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기타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181배에서 9배 수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기타샘물 간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 해소 기대
-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격에 대한 가중평균방식 적용(영 제9조의 2제2항)
 - 종전에는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균판매가격의 산정방식을 각 사업자의 평균판매단가를 합산한 금액을 사업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하는 산술평균방식으로 하였으나, 판매량 등의 시장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의 평균판매단가에 각 사업자의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개선함(붙임 참고)
- 위임범위의 확대(영 제1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붙임1]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격 산정에 관한 조항(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붙임2] 수질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개정 2008. 1.29. 환경부훈령 제758호)

[붙임1]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격 산정에 관한 조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격 산정 등)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균판매가격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균가격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가격이 전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가격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1분기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에 따른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후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먹는샘물과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샘물은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31>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제조업자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판촉용은 제외한다)와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란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

나. 수탁가공 등의 방식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때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제조업자등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등은 그에 필요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4월 말까지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붙임2] 수질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수질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정 1995. 9. 4. 환경부훈령 제305호

개정 1998. 1.31. 환경부훈령 제385호

개정 2008. 1.29. 환경부훈령 제75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9>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기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부담금

제 2 장 부담금 산정(삭제)

제 3 장 부담금의 징수

제5조(판매가격의 적용기준) (삭제)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한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이하 “징수권자”라 한다)가 가진다. <개정 2008. 1.29>

제7조(징수권자의 업무)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납입에 관한 사항
3. 부담금의 징수·독촉·체납처분·징수유예결정 및 분할납부결정에 관한 사항
4. 공매등에 관한 사항
5.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제8조(납부고지서 서식)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단수계산 및 고지금액의 최저한) ①부담금의 산정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고지한 부담금·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

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①징수권자는 부담금의 납부 고지서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우편송달기간을 감안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②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였거나 분할납부토록 한 경우의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우편송달기간을 감안하여 발부한다. <개정 2008. 1.29>

제11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①징수권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고지를 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중 납부금액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변경고지한 때에는 변경전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제품의 판매실적 조사에 따른 추가고지) ①징수권자는 제품의 판매 실적등을 조사한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이나 그 부족액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3조(점검확인의 실시) ①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등 부과대상현황관리의 적정여부
2. 부담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
3. 부과·징수대장등 기록·관리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주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조업자 등 : 반기 1회이상

2. 기타 샘플개발허가를 받은 자 : 연 1회이상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부과·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①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④부담금의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질개선후담금 납부고지서 원부				(제1면)			
발행번호 회계년도		년		(수입징수관용)		납부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수입징수관명 국고계좌 :			
회 계	환경개선특별	소관	환경부	관		항		목	
과 목	환경개선부담금				년 기분 수시분				
합계금액					징수금산출근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직 인

		수질개선후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입자)				(제2면)			
발행번호 회계년도		년				납부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수입징수관명 국고계좌 :			
회 계	환경개선특별	소관	환경부	관		항		목	
과 목	환경개선부담금				년 기분 수시분				
합계금액					징수금산출근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직 인		
170mm×105mm (전산용지(특급)34g/m ²)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영수필통지서 (제3면)									
발행번호 회계년도	년	(수입징수관용)					납부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수입징수관명 국고계좌 :		
회 계	환경개선특별	소관	환경부	관		항		목	
과 목	환경개선부담금					년 기분 수시분			
합계금액						수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영수필통지서 (제4면)									
발행번호 회계년도	년	(한국은행용)					납부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수입징수관명 국고계좌 :		
회 계	환경개선특별	소관	환경부	관		항		목	
과 목	환경개선부담금					년 기분 수시분			
합계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
 (전산용지(특급)34g/㎡)

[별지 제2호서식]		수질개선부담금 납부독촉고지서 원부						(제1면)	
발행번호 회계년도	년	(수입징수관용)						납부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수입징수관명	
회 계	환경개선특별	소관	환경부	관		항		목	
과 목	환경개선부담금					200 년 월			
합 계						징수금산출근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담금(부과금)									
가 산 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직 인									

		수질개선부담금 납부독촉고지서 겸						(제2면)	
발행번호 회계년도	년	영수증서 (납입자)						납부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수입징수관명	
회 계	환경개선특별	소관	환경부	관		항		목	
과 목	환경개선부담금					200 년 월			
합 계						징수금산출근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담금(부과금)									
가 산 금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직 인									
170mm×105mm (전산용지(특급)34g/m²)									

수질개선후담금 납부 영수필통지서

(제3면)

발행번호 회계년도	년	(수입징수관용)				납부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수입징수관명 국고계좌 :		
회 계	환경개선특별	소관	환경부	관		항	목	
과 목	환경개선부담금				200 년 월			
합계금액					수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수질개선후담금 납부서

(제4면)

발행번호 회계년도	년	(수입징수관용)				납부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국고계좌 :		
회 계	환경개선특별	소관	환경부	관		항	목	
과 목	환경개선부담금				년 기분 수시분			
합계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
(전산용지(특급)34g/m²)